

2021년도

진건읍 종합감사 결과 보고

□ 감사개요

대상기관	감사기간(5일간)	감사대상범위(업무전반)
진건읍	2021.4.14.~4.20.	2019.5.1.~2021.2.28.까지

□ 감사결과 : 지적건수 28건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현지조치
-	13	8	-	1	6

※ 신분상 조치 : 건/ 명

재정상 조치 : 건 / 0,000,000원 (회수 0,000,000원)

감 사 관
(감 사 팀)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1년 연간 감사 계획[감사관-890(2021.1.20.)호]에 따라 매년 2~3개 본청 실·국 단위 감사 실시,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업소 등 2(3)년 주기 종합 감사 실시 및 취약(예상)분야 특정감사 실시를 통하여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확립하고 직무감사의 효과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후속조치 실행력을 강화하고, 기 추진 중인 행정복지센터 통합·연계 감사 실시로 2021년은 진건·퇴계원, 별내동·별내면 통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적 측면의 감사를 목표로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자체 사전점검을 통하여 자가점검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정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2021년 자체감사 추진에서는 감사처분 기준을 정립하여 감사처분의 일관성·형평성·신뢰성을 확보하고 반복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감사 지적사례 책자발간을 통하여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진건읍은 2019년 6월 종합감사를 받은 이후 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게 되어 2019년 5월 이후 진건읍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 업무 관련 법규 등 준수여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회계질서 준수 여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 성과 위주의 감사, 수집된 감사정보, 내·외부 제보사항 등을 활용한 감사, 행정복지센터 위임(인·허가)사무·민원 처리 지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시설공사·물품·용역 계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적정 여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및 수당지급 적정여부, 민원사무 처리의 적정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복지 자원관리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환경, 부동산, 산업, 농지, 건축, 도시 분야 업무처리 및 지도·단속 등 사후조치 적정 여부,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준수 여부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존 종합감사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진건읍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는 자가점검시스템을 통해 부서 자체에서 대상 목록에 대하여 사전 체크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감사결과, 시 의회 논의사항 및 고충민원 발생사항, 시민의견 수렴 등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분석하였으며, 2021. 4. 14.부터 동년 4. 20.사이(총 5일간)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에 각 과장 및 담당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확인서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1. 진건읍 현황(2021. 2. 28.기준)

□ 일반 현황

구 분	면적(km ²)	인구수			세대수	행정구역	
		계	남	여		리(통)수	반수
진건읍	31.2	24,171	12,555	11,616	11,043	37	260

□ 직원 현황

구 분	정원	현원	직급별 현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계	59	56.7	1	3	12	9	14.7	17	(6)
생활자치과	18	16.7	1	1	3	5	2.7	4	(1)
복지지원과	17	16		1	3	2	3	7	
도시건축과	24	24		1	6	2	9	6	(5)

2.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요약

(단위 : 건, 명, 천원)

합계			변상 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계	일반	시정 완료 (금액)	인사 자료 (인원)	비위 (인원)		
28	0,000		-	-	13	8	-	1	-	-	-	-	-	-	6

구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회수	추급	환급	부과	계	징계	훈계
합계	28 (6)	16 (3)	11 (3)	1 (-)	5 (0,000,000)	5 (0,000,000)	-	-	-			

* () 현지조치 요구 건수

□ 부서 자가점검1) 결과

연번	자가점검 목록	진건음	점검결과(조치계획)	비고
1	통·리장 수당 지급 적정여부 확인	진건음	• 사능0리 송○○ 외 3명에게 과소지급된 이 장 수당액 00,000원 추가 지급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적정성 여부	진건음	• 공공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과다분 0,000원 환급처리 및 ◇◇◇◇.◇.◇. 사용료 누락 분 000,000원 세입조치 완료	
3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 료 부과 적정여부	진건음	• △△△△.△.△. 오○○ 외 ☆명에게 과다 부과된 과태료 00,000원 환급 • △△△△.△.△. 전○○에게 과소 부과된 과태료 00,000원 재부과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적정 여부	진건음	•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농지 중 면적 (1,000㎡) 초과분 검토 후 농업경영으로 수정	
5	장애인복지카드 회수 적정 처리 여부	진건음	• 장애인 등급변경 및 사망자에 대한 장애인 복지카드 반환통보서 발송 ◎◎◎◎.◎.◎.기준 반납되지 않은 방○○ 외 ◎◎명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6	주택건설사업등록 확인 적정 여부	진건음	• 해당사항 없음	
7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 록 절차 준수 여부	진건음	• 거주불명 직권조치 후 공고 미실시, 반송 된 최고장 관련 최고공고 미실시, 직권조 치 공고기간 미준수 확인 후 재공고	

1) 부서 자체에서 감사 실시 전, 자가점검 대상 목록에 대하여 감사관에서 제시한 점검
방법으로 사전 체크하여 점검 결과를 제출(감사 및 처분 제외)

□ 총 평

감사결과 총 2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어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하고, 이 가운데 사안이 경미한 6건은 감사기간 중 주의 등의 현지조치 요구하였다.

또한, 업무 부적정 및 소홀 등과 관련하여 건 명에 대하여 주의요구(훈계) 조치하였으며, 건 0,000,000원의 회수 및 환급 등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진건읍은 2017. 2. 6. 행정복지센터로 개청이후(3개과 11개팀) 대민업무 및 안전, 복지, 문화·체육, 경제·산업, 환경, 산림개발·보호, 도시·건설 등의 위임사무를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인한 공공시설 방역활동,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 백신접수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 관련 현안사항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직원들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고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깨뜨리고 계약 및 회계업무에 있어서 미흡한 점도 발견되었다.

지적사례 주요 원인으로는 관련법규 및 지침에 대한 숙지부족, 선례답습적 업무 처리 등으로 앞으로 업무 처리절차 매뉴얼화, 다양한 업무 종류에 따른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이번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개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담당자에게 업무 연찬 및 관련 법령 숙지에 따른 자체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법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3. 감사결과 처분계획

□ 처분요구내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합계			변상 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계	일반	시정 완료 (금액)	인사 자료 (인원)	비위 (인원)		
28	0,000		-	-	13	8	-	1	-	-	-	-	-	-	6

구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회수	추급	환급	부과	계	징계	훈계
합계	28 (6)	16 (3)	11 (3)	1 (-)	5 (0,000,000)	5 (0,000,000)	-		-			

* () 현지조치 요구 건수

□ 처분요구목록(본 처분 22건)

일련 번호	담당부서	제 목	조치구분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총 23건		총액 0,000,000원 회수 0,000,000원		
1	생활자치과 ☞☞☞☞과	주민자치회 수강료 사용 및 지도·감독 소홀	시정 권고			
2	생활자치과 복지지원과 도시건축과	출장신청(승인) 및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000,000원		

일련 번호	담당부서	제 목	조 치 구 분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3	생활자치과 도시건축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4	생활자치과	민간보조금 지급·정산 소홀	시정	회수 000,000원		
5	복지지원과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0,000,000원		
6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 의사무능력(미약)자 의 급여관리 소홀	시정			
7	도시건축과	건축허가 취소처분 소홀	시정			
8	도시건축과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등 설계도 서 검토 소홀	주의			
9	도시건축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 산정 부적정	주의			
10	도시건축과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 소홀	시정			
11	도시건축과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부적정	시정			
12	도시건축과	산지 불법 관리 소홀	시정			
13	도시건축과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처리 부 적정	주의			
14	도시건축과	시설공사 설계서 검토 및 감독 업무 소홀	시정	회수 000,000원		
15	도시건축과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16	도시건축과	시설공사 정산 업무 소홀	시정			
17	도시건축과	마을회관 토지 및 건물 매입 시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8	도시건축과	도로점용허가 관리 부적정	시정			

일련 번호	담당부서	제 목	조 치 구 분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19	생활자치과	물품 구매계약(직접생산증명서)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	생활자치과	수의계약 부적정(분할발주)	주의			
21	생활자치과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 산정 부적정	주의			

□ 처분요구 목록(현지처분 6건)

일련 번호	담당부서	제 목	조 치 구 분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총 6건		총액 000,000원 회수 000,000원		
1	복지지원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	주의			
2	생활자치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시정			
3	복지지원과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000,000원		
4	복지지원과	국민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유효 기간 만료예정자 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5	복지지원과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6	생활자치과	공유재산관리(건축물대장 작성) 소홀	시정			

4. 주요 지적 사항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 수강료 사용 및 지도·감독 소홀	NO. 1
----------	--------------------------------	--------------

- 진건읍 주민자치회에서는 수강료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등을 통해 정당한 채주에게 지출하여야 함에도 총 〇건, 000,000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체크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을 불분명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진건읍 주민자치회에서는 타 단체 및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집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 ♣♣♣에서 주관하는 추석맞이 노래자랑에 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에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불우이웃돕기 김장 성금으로 000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경품, 상품, 선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에는 ☆☆☆☆☆☆ 증정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 000,000원을 집행하는 등 수강료 수입으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는 바, 「진건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7조(재정)제1항제4호의 규정의 내용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을 권고한다.
- 봉사활동비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고, 수강료 수입으로 지급하는 위원 및 자원봉사의 활동비 지급범위와 지급금액은 운영세칙으로 정해야 하며, 인건비의 경우 매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에 대한 활동비, 행정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관련 각종 기준, 식대,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을 운영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항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수강료 수입으로 지급하는 위원 및 자원봉사 활동비 지급범위와 금액의 기준 마련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세칙 개정 (시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따라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 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 실시 권고)

2	민간보조금 지급 · 정산 소홀	NO. 4
---	------------------	-------

• 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진건읍 생활자치과에서는 0000년 진건읍 체육대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청렴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출할 때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출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함에도 진건읍 체육회에서는 체육대회 행사장(☞☞☞☞ ☞☞센터) 대관료 임대료(계약금, 잔금)를 지급하면서 교회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 확인증만 첨부하고 대관계약서 등은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초대가수 출연료, ☐☐☐☐☐☐☐☐☐ 공연팀 출연료, 무대음향 설치비 지급 역시 계약서 등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확인증만 첨부하였고, 우승상패 제작, 단체복 구입(계약금, 중도금, 잔금), 홍보물 제작, 게임도구 렌탈, 간식비용 지출 시에도 구입(렌탈)물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내역서 또는 견적서, 사진 등) 없이 영수증만 첨부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정산검사 없이 체육회에서 제출한 0000년 체육대회 보조금 정산서 그대로 체육과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 자율방범대 지원 보조금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출할 때 증빙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함에도 ★★○ 자율방범대에서는 0000년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자체 결재 없이 지출하였고, 보조금의 집행범위에서 소모성물품 구입비는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집행 할 수 없음에도 0000년 12월 00일과 12월 00일 지출결의서상에는 사무용품 구입으로 지출명세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각각 000,000원의 LED TV와 000,000원의 온풍히터기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 또한

★★○ 자율방범대에서는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순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고 주유 시에는 지출결의서 및 차량운행일지 (또는 순찰일지)에 주유차량에 대해 기입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주유비 영수증만 첨부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2021년부터는 지정차량 운행)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물품구입비 000,000원 회수 조치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시에는 교부조건 등을 명백히 하여 교부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 (시정)

3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NO. 5
----------	--------------------	--------------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행복e음을 통한 자료확인 및 소명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징구를 통해 가구유형 변동, 수급정지 여부, 수급권 상실 여부 등 수급자격 및 가구유형(인적변동)을 조사하여야 하며, 단독가구 노인 사망 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하여야 한다.
- 진건읍 복지지원과에서는 행복e음 인적변동의 사망의심자로 미통보 되었고 신고의무자의 사망신고 지연(◎◎◎◎.◎.◎.사망/□□□□.□.□.사망신고)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ㅎㅎㅎ에 대해 수급권 상실 여부 등을 조사하지 못하여 0000.0.~0000.0. 기간 동안 0,000,000원의 기초연금이 부적정 지급되었으며 환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기초연금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초연금 0,000,000원 회수조치 (시정)

4	건축허가 취소 소홀	NO. 7
----------	-------------------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허가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허가

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유효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진건읍 ▲▲리 ○○○번지 상 건축허가 등 총 ●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유효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총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 (시정)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 소홀	NO. 10
---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진건읍 ▣▣리 ☆☆☆-☆ 외 ○필지 상 무단으로 설치한 공작물 관련하여 민원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총 ◎◎건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개발제한구역 불법사항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 총 ◎◎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조치 (시정)

6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부적정	NO. 11
---	-----------------	--------

-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 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도시건축과에서는 ★★리 산◇◇-◇번지 외 ○필지 상 산지전용(협의)허가 등 총 ◎건에 대하여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매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확인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하였어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진건읍 ▲▲리 산◆◆-◆◆번지 외 ○필지 상 공장신설승인 시 의제처리된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산지전용허가 건에 대하여도 0000년부터 현재까지 재예치토록 안내하지 않았으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관리법」 협의 시, 기 복구비 예치금 보증에 따른 보험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복구비를 재산정하여야 함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당초 산지전용협의 조건 준수 바람’ 으로 회신한 하는 등 건축협의 또한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산지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산지전용 허가 건에 대하여 복구비 재산정하여 예치하도록 조치(시정)

7	시설공사 설계서 검토 및 감독업무 소홀	NO. 14
---	------------------------------	--------

-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리 도로변 환경개선사업』 외 ○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자는 경계석 기초,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을 시공하지 않았으며, 흙관 보호공 및 전석의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합판 거푸집을 유로폼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또한 흙관 보호공 시공 시 기초콘크리트시공 및 흙관 부설 후 보호공을 타설하였어야 하나 기초콘크리트와 보호공을 일괄 시공하는 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음에도 준공 전 설계 변경(감액)하지 않는 등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해당사업 외 공사 철거 후 발생하는 조경석을 재사용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 제방정비공사』 발주 시 관급자재(조경석)에 대하여 전체 소요량만큼 계약 의뢰하였으며, 공사 추진 시 재활용 자재와 관급자재 간 규격이 상이함에 따라 사업구간과 인접한

중점부 일부(◎◎㎡)에만 교대 보강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였다. 이에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미사용 자재에 대하여는 하천 범면 보강 또는 매각 등 재사용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나 사후정산이 필요함에도 준공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리 ○○○○-○○○번지 일원 ○○○○ 포장보수 공사』 시행 시 시공자로부터 실정보고 등에 관한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없었 으며, 『○○○○ ○○○ ○○○ ○○○(○○○○) 조성공사』 외 ◎건의 공사를 시행하면 서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함에도 발주청의 승인 없이 설계변경 을 진행하는 등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 ○○○ ○○○ ○○○(○○○○) 조성공사』 외 ◎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추가공사 및 도시가스 설치공사 중복구간에 대하여 선행 공사 완료 후 포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공사 중지하였다. 이후 선행 공사 완료 등의 사유로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조속히 공사 중지 해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검토·보고 없이 공사 중지 기간 내 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등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지 바라며, 「◆◆◆ 제방정비공사」 시행 시 정산되지 않은 재활용 자재(조경석)에 대하여는 자연석 매각 단가로 계상한 000,000원 회수조치

8	시설공사 정산 업무 소홀	NO. 16
----------	----------------------	---------------

-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리 ☆☆☆☆☆☆☆ 조성공사』 외 ◎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발주 시 지방서를 누락하여 내역서에 반영된 PS (Provisional Sum)단가의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계약 이행 완료 후 사후 정산이 필요한 PS단가 및 사토 처리 단가 등의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의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교통정리 신호수

등)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불가함에도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횡수가 기준에 미흡하였다. 또한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가 ◎월 노무비와 중복 계상되었음에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등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처리 하지 않은 총 ◎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맞게 정산처리 조치 (시정)

9	물품 구매계약(직접생산증명서) 업무처리 부적정	NO. 19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물품을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 진건읍 생활자치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옥내·외 안내판의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직접생산 여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등)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금 00,000,000원의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 (주의)

10	수인계약 부적정(분할발주)	NO. 20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등에 따르면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분할 발주를 금지하도록 규정

	<p>않을 정도로 까맣게 지워진 사진이 부착된 응시원서를 그대로 접수하였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해당 조회대상 기관이 아님에도)를 제출 받고도 관련 조회를 하지 않은 채(내부결재만 득하고 실제로 조회한 결과 없음) 1차 서류심사에 통과시킨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년~▽▽▽▽년 매년 『ㄱㄱㄱㄱ ㄴㄴㄴㄴ』를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자의 근무경력 조회를 누락하고, ★★ ★★년도에는 채용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채용승인은 채용하지 5일 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요청하여야 함에도 ☆☆☆☆년도에는 채용 3일 전 요청하여 채용승인(◇◇◇◇.◇.◇.) 이전인 ◆◆◆◆.◆.◆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는 등 채용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 • 진건읍 생활자치과에서는 0000년 ㄱㄱㄱㄱ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서류 전형 결과 및 면접계획』에서 응시자 ㄱㄱㄱ은 서류 심사 결과 서류미비로 처리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미비하였는지 확인 할 수 없는데도 면접을 결정하였고, 서류 심사 결과에서는 운전면허를 0점 처리 하였음에도 서류 심사 평가표에서는 00점으로 처리하는 등 서류 심사 결과 점수를 신뢰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채로 운영한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
<p>3</p>	<p>기초생활보장수급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No.6)</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건읍 복지지원과에서는 ㄱㄱㄱㄱ 등 ○○명에 대해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수리 보관하면서 서식 담당자 의견란에 일상적 의사소통, 물품 구매 시 거스름돈 계산, 은행계좌 입출금 정리, 급여 지출 계획 등 개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기록이 미흡함에도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에서도 제외한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사업 안내」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작성 또는 급여관리자 지정 조치
<p>4</p>	<p>관계전문기술자안의 협력 등 설계도서 검토 소홀 (No.8)</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진건읍 ㄱㄱ리 산◆◆-◆◆ 외 ○필지 상 ◎◎ ◎이 신청한 건축허가 설계도서상, 5미터 이상의 옹벽을 축조하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작물의 배치도, 공작물의 구조도의 제출을 확인하고, 토목분

	야 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았음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요청 등 별도조치 없이 건축허가 처리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
5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 산정 부적정 (No.9)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진건읍 ♣♣리 ◎◎◎-◎번지 상의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은 연면적 ○○㎡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였고, 진건읍 ☒☒리 ㄷㄷㄷ-ㄷ번지 상 건축물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로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00,000원 과다부과 하는 등 총 ○○건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부적정하게 산정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6	산지 불법 관리 소홀 (No.12)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진건읍 ♣♣리 ㄱㄱㄱ번지(임야)를 훼손하여 불법건축물 설치 및 페아스콘 포설 등으로 ◎◎◎◎.◎.◎. 적발 된 산지 불법 사항에 대하여 ▽▽▽▽.▽.▽. 원상복구 명령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미조치 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산지 내 불법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진건읍 ♣♣리 ㄱㄱㄱ번지의 산지 불법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
7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No.13)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 대상이나 허가로 처리하였고,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반려처리 하여야 함에도 허가로 처리한 사실 아울러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 허가(신고) 처리 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공문 상에는 민원 접수번호(접수일), 민원명만 확인할 수 있을 뿐,

	<p>광고물 설치 위치, 광고물 종류 및 규격, 존치기간 등은 확인이 불가하므로 공문 상 옥외광고물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p>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p>8</p>	<p>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No.15)</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리(☆☆-☆번지) □□□□ 조성사업』 사업 시행 시 시공자는 마을 미관 개선을 사유로 도로 외측에 설치 예정인 관목을 수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음. 이에 공사감독자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로 현황 및 그에 따른 식재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계변경을 진행하였고 곡선 구간 시야 확보가 불리해짐. 또한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함에도 발주청의 승인 없이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아울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사업 추진 중 식재된 가로수(■ 나무) ○○주 중 ○주가 고사하였음에도 하자 보수 등 공사 준공 후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처리 절차 이행에 철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별표 4]에 따라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조경식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조치
<p>9</p>	<p>마을회관 토지 및 건물 매입 시 업무처리 소홀 (No.17)</p>
<p>위법 부당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리 및 ◇◇◇툽리 마을회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면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음에도 별도의 근거 없이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한 사실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보상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10	도로점용허가 관리 부적정	(No.18)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점용기간이 끝난 허가 건에 대하여 기간연장 미신청 시 허가취소 및 무단점용 여부 검토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이 만료된 도로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기간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중 ◆건에 대하여는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또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중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미실시 하는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 아울러 기간 만료된 도로점용허가 건은 기간연장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도로점용허가 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절차 확인을 이행 	
1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 산정 부적정	(No.21)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건읍 생활자치과에서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와 마찬가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을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공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진건읍 생활자치과에서는 “☆☆☆☆☆ ☆☆☆☆☆☆ ☆☆☆ ☆☆ ☆☆☆☆ 건축 및 설비(○차)공사”(기초금액: 000,000천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00일)을 공고함에 있어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대금청구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준공금을 지급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1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	(현지처분)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건읍 복지지원과는 감사일 현재(◇◇◇◇.◇.◇.)까지 0000년 □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1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현지처분)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건읍 생활자치과에서는 □□□□□□ 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면서 감사대상기간 이전부터 이월되어 온 금액 0,000원을 세입조치 등 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조속히 세입 등 조치
14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 (현지처분)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건읍 복지지원과에서는 의료기관 장기입원(▽▽▽▽.▽.▽.~현재)으로 3개월 이상 장기부재 중인 ■■■■에 대하여 장애인가구 난방비 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과다 지급된 장애인가구 난방비 000,000원 회수 조치
15	국민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관리에 관한 사항 (현지처분)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건읍 복지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및 의뢰·판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만료일 30일 전까지 근로능력판정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 등 ○명에게 지연하여 안내 하는 등 국민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및 「근로능력판정사업 사업안내」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16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현지처분)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건읍 복지지원과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예정자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 등 ○명에게 재판정 통보기한(재판정 기한일 3개월 前)을 지연하여 안

	내 하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처분 요구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17	공유재산관리(건축물대장 작성) 소홀 (현지처분)
위법 부당 내용	•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는 △△△△과-○○○○(◆◆◆◆.◆.◆.)호로 진건읍 ■■■리 ▲▲▲번지 상 □□□시설(사회복지시설) 준공에 따른 건축물대장 생성 요청을 받고, 제출된 서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신규 생성할 수 있도록 요청부서에 토지분할 절차를 선행토록 보완 요청하여야 함에도, 별도 조치 없이 당초 건축물대장(♀♀♀♀시설 ★개동)에 추가사항으로 등재하였고, 현재 당초 건축물(♀♀♀♀시설 ★개동)은 ○○○○.○.○.토지분할로 ▲▲▲-▲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건축물대장상 ▲▲▲번지로 남아 있는 등 공유재산관리(건축물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처분 요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분리하여 지번과 건축물이 일치하도록 조치